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공공건축 교육

설계공모 제도의 이해

2022.09.

박석환 부연구위원
shpark@auri.re.kr

01.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 개편방향 및 현황

02. 설계발주방식의 종류 및 결정 과정

03. 설계공모 유형별 주요 내용 및 운영 요령

01.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 개편방향 및 현황

설계공모 대상 확대

설계공모 유형 다양화

심사 공정성, 전문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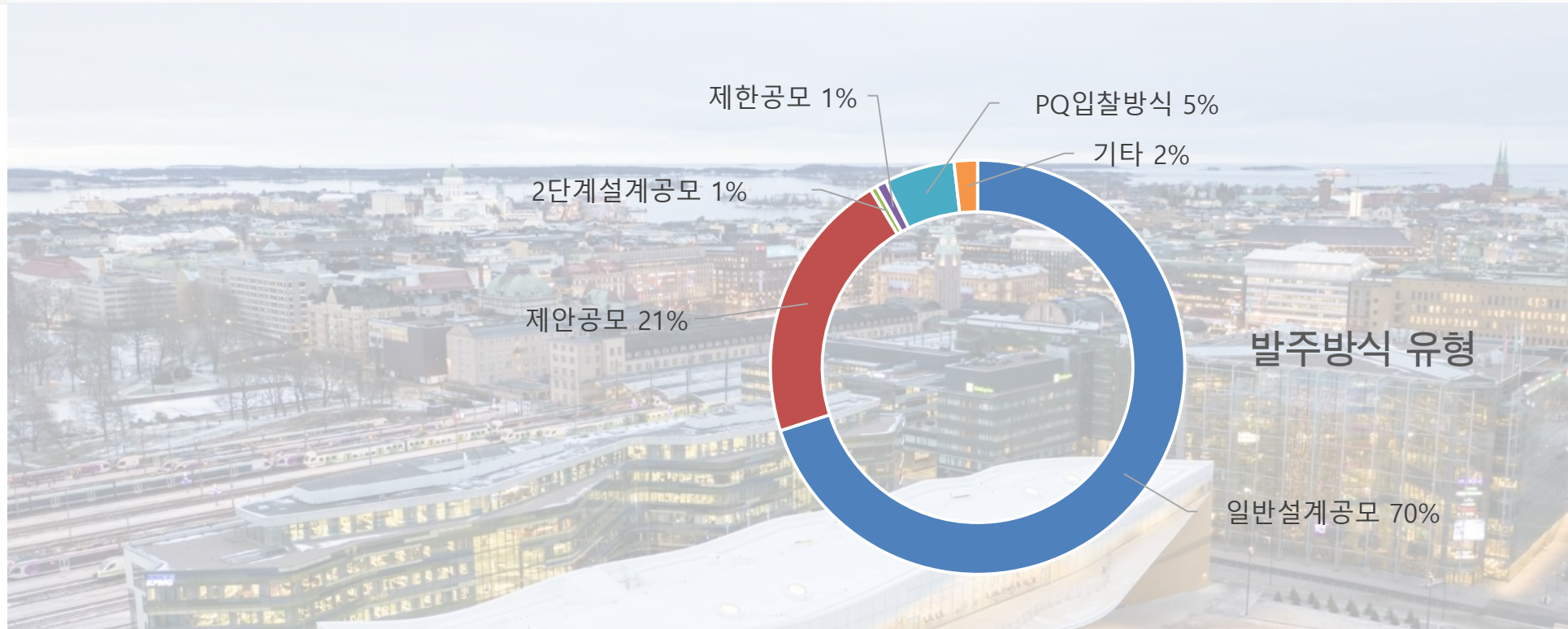
01.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 개편방향 및 현황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 좋은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품질로 경쟁하는 설계공모 제도가 지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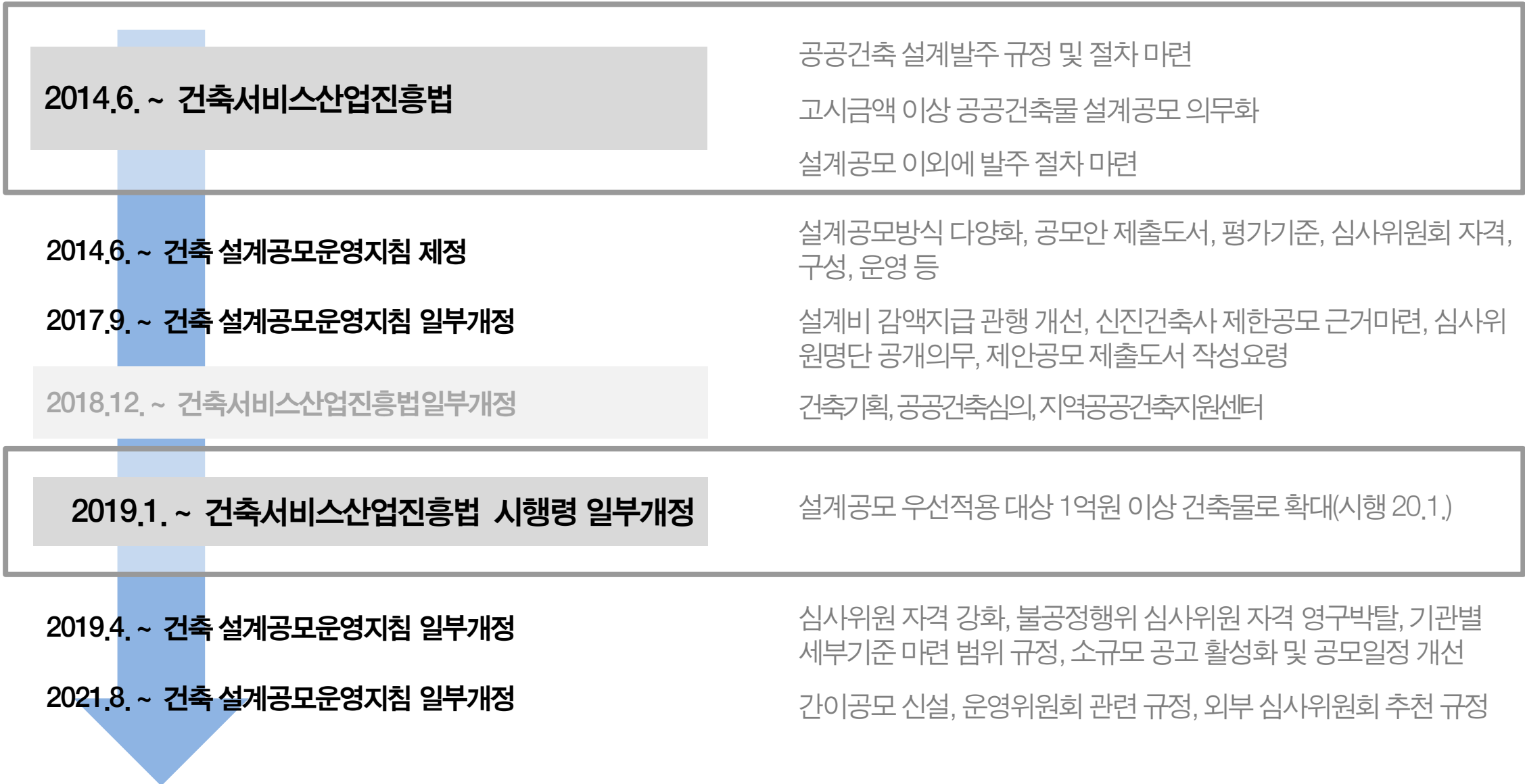
사진출처 : ALA Architects Helsinki Oodi Central Library and architecture for culture in Finland

01.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 개편방향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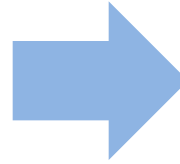
설계공모				PQ방식	기타	총합
일반설계공모	제안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한공모			
844	257	6	10	66	22	1205
(70.0%)	(21.3%)	(0.5%)	(0.8%)	(5.5%)	(1.8%)	(100%)

※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205건의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 사업의 발주 방식 통계



기존

고시금액 이상 사업
(설계용역비 2.0억 원 이상)



개정

설계용역비 1억 원 이상 사업

- ※ 시행일 2020년 1월 16일 부터
- ※ 설계공모 대상 건축물 용도는 변경없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1. 15.>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설계공모 대상확대로 인한 예상되는 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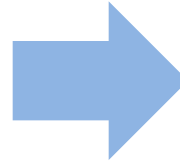
기존 대비 설계공모 적용 대상 사업은 2배 이상 증가
but 기관 내 전담인력은 변경없음

			2015									
기관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1천만 원 미만		1~5천만원미만		5~1억 원 미만		1~2.1억원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광역시도본청	427	153,701,086	165	39%	152	36%	41	10%	26	6%	43	10%
기초자치단체	3,385	57,192,119	1,579	47%	1,361	40%	208	6%	120	4%	117	3%
			2016									
기관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1천만 원 미만		1~5천만원미만		5~1억 원 미만		1~2.1억원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광역시도본청	494	90,769,045	169	34%	214	43%	41	8%	28	6%	42	9%
기초자치단체	4,048	44,315,709	1,705	42%	1,721	43%	274	7%	178	4%	170	4%
			2017									
기관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1천만 원 미만		1~5천만원미만		5~1억 원 미만		1~2.1억원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광역시도본청	1,324	168,437,467	388	29%	507	38%	129	10%	74	6%	227	17%
기초자치단체	8,852	29,409,911	4,500	51%	3,454	39%	503	6%	200	2%	195	2%

출처: 박석환 외(2018)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기획 내실화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p65

기존

일반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개정

일반설계공모, 2단계공모, 제안 공모
+간이공모 방식공모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보다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유형을 다양화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10조(설계 발주방식 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수주실적과 저가입찰에 의한 설계자 선정방식보다는 설계공모 방식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등 건축가나 계획가의 능력과 설계안의 우수성이 반영되어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① 발주기관등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및 간이공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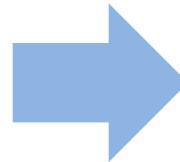
1.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축기본법 제22조의 디자인 시범사업으로서 디자인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사업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가방식, 심사위원 자격 기준 조정

심사위원 자격 강화 및 구체화

기존

국내외 건축사 자격 소지자, 대학의 건축설계 분야 조교 수급 이상 5년 이상 경험
기타 동등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
한 사람



개정

기존 자격조건 + 건축도서에 대한 해독이 가능한 자
+ 심사와 관련 금품 수수나 부정한 비위사실이 없는 자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0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건축도서에 대한 해독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사업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 중에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자는 심사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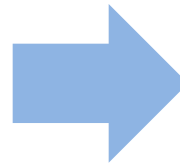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가방식, 심사위원 자격 기준 조정

심사위원 자격 강화 및 구체화

기존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 심사위원으로 구성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전체의 30퍼센트 이내에서 구성 가능



개정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 심사위원으로 구성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위촉 불가(건축사, 건축설계분야 5년이상 경험 소유자만 가능)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기관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호의 자격을 갖춘 소속 임·직원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의 총 인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이하 생략

02. 설계발주방식의 종류 및 결정 과정

**설계공모를 우선적용,
PQ, 입찰 등 지양**

02. 설계발주방식의 종류 및 결정과정

설계공모 대상(기존)

고시금액 이상 사업 (설계용역비20억 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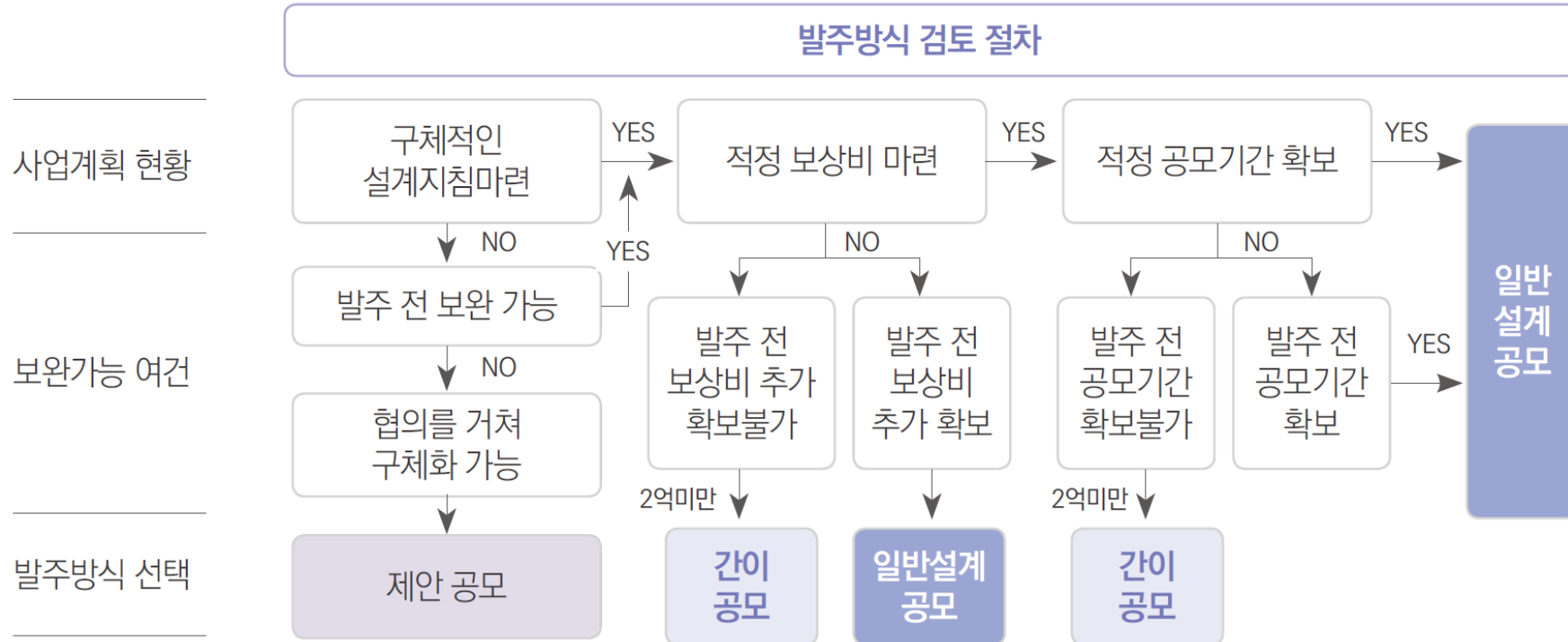
건축물 용도	설계비 추정가격*	발주 방식			비고
		설계 공모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1억원미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호~제 16호, 제27호	1억원이상~ 고시금액미만	○	○(PQ)	○	-
	고시금액이상~ 5억원미만	●	×	×	사전검토를 통해 비적용대상 인정
	5억원이상	●	×	×	사전검토+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적용대상 인정

설계공모 대상(변경 2020년 1월 16일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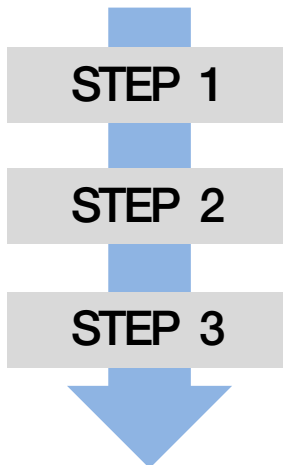
설계용역비1억 원 이상 사업

발주 방식				비고
설계 공모	입찰	협상에의한 계약		
○	○	○		5천만원 이상 사업은 건축기획 심의대상
	○(PQ)			사전검토를 통해 비적용대상 인정
	×	×		사전검토 후 중앙건축위원회 심 의를 통해 비적용대상 인정

●: 의무적용, ○: 선택적용, ×: 적용불가, ○(PQ):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



출처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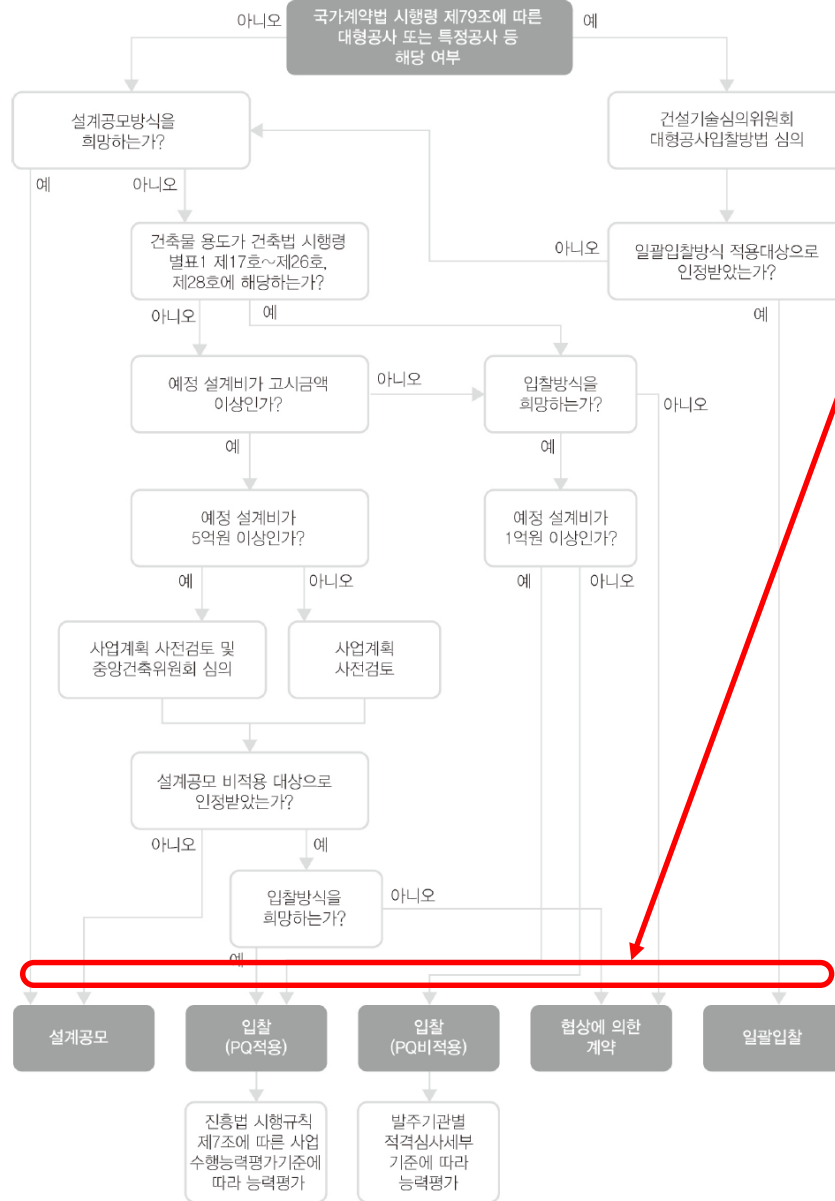


STEP 1 구체적인 설계지침 마련 여부 확인

STEP 2 적정 보상비 마련 및 적정 공모기간 확보 가능 여부 확인

STEP 3 최적의 설계공모 방식 선택

출처 :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ver.2), p10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규정(신규)
시행 (2019.12.19.)**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수행등)①생략
 ②공공기관은 공공건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자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략
 ④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 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설계공모 방식 이외 PQ 적용 사례

설계공모방식 외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한 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나 설계시공일괄입찰적용도 가능하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가능

※ 설계공모 적용이 어려운 사례

설계공모를 통해 디자인의 우수성이나 계획개념이나 수행전략 등을 변별력 있게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노후한 천장재료나 전등, 설비교체 사업에 해당하거나 사업규모가 커서 설계용역비가 1억 원이 넘는 사업의 경우는 설계공모를 통해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사업은 일반설계공모나 제안공모 적용이 어려움

위험물질을 다루는 연구시설을 비롯하여 특수한 장비나 특정 규격의 설비가 필요한 시설 등은 설계자 선정 시 유사용역에 대한 실적 평가를 비롯하여 별도의 자격을 가진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규격에 따라 타공종과 협력하여 설계를 하는 사업 인 경우

03. 설계공모 유형별 주요 내용 및 운영요령

**설계공모 대상확대로
관련기준을 준수한
운영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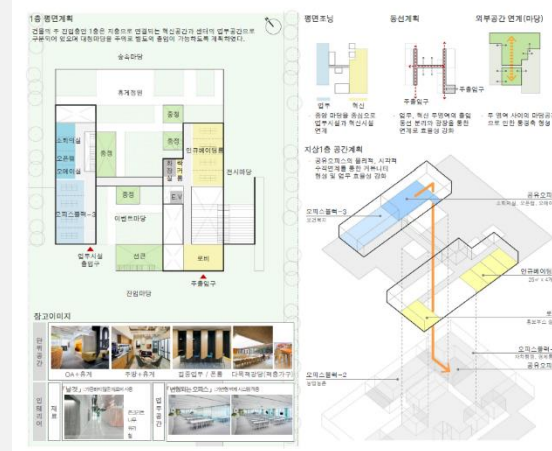
03. 설계공모 유형별 주요 내용 및 운영요령

설계공모 유형

구분	주요 내용
일반 설계공모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
2단계 설계공모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
제안 공모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
간이 공모	소규모 사업(2억 원미만)을 대상으로 제출도서를 간소화하여 시행하는 설계공모 방식



일반설계공모 제출도서 예시



제안공모 제출도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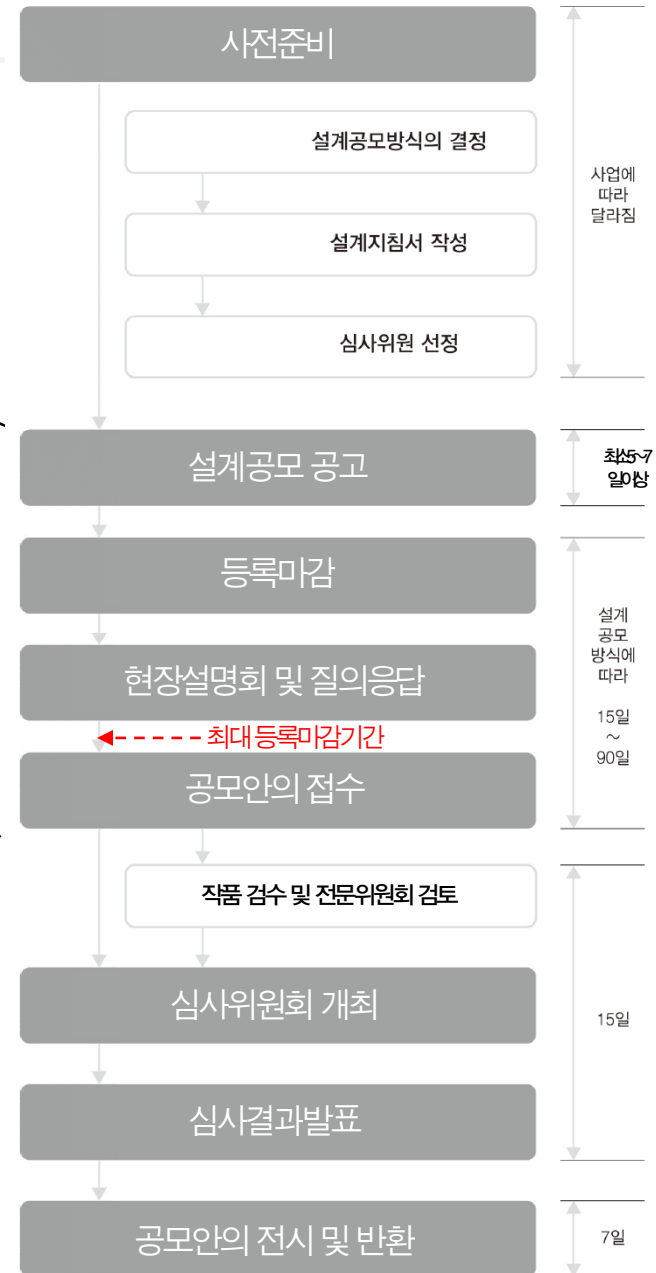
03. 설계공모 유형별 주요 내용 및 운영요령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상 설계공모 기간 규정

구분	기준	최소	공고일부터 등록마감
일반 설계공모	90일 이상	45일 이상	최소 7일 이상
간이 공모	30일 이상	-	최소 5일 이상
2단계 설계공모	1단계 30일 이상	20일 이상	최소 7일 이상
	2단계 60일 이상	30일 이상	-
제안 공모	20일 이상	-	최소 5일 이상

공모기간은 공모 공고일로 부터 공모안의 제출마감일까지를 의미함
(변경전에는 등록마감일로 부터)

따라서 기존 지침보다 전반적으로 20일가량 단축됨



03. 설계공모 유형별 주요 내용 및 운영요령

설계지침서 주요 내용

목차	주요 내용	
	일반설계공모	제안공모
사업개요	사업의 목적, 사업명칭, 대지위치, 면적, 건축규모,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총 사업기간 및 설계기간	일반설계공모와 동일
설계공모 개요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설계공모 참가 자격	일반설계공모와 동일
설계공모 주요일정	공고 일시, 등록 일시·방법·장소, 설명회 일시·방법·장소, 질의응답 기간·방법, 공모안 제출 일시·방법·장소, 심사 일시·방법·장소, 결과발표 일시·방법	일반설계공모와 동일
설계지침	설계기본방향,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 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 조경계획, 토목계획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시설별 면적, 주요 시설 및 기능별 세부설계지침, 관련 법규 적용기준	설계기본방향,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주요 기능별 면적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 작성방법	종류 및 규격, 작성방법,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제안요청 과제)
심사 및 결과	평가기준, 심사위원 명단, 심사방법,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 보상의 내용,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요령	일반설계공모와 동일
제공자료	지침서, 현황측량도, 지형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질조사보고서 등	일반설계공모와 동일
	관련 서식 일체	관련 서식 일체

03. 설계공모 유형별 주요 내용 및 운영요령

설계공모 주요일정 (예시)

구분	일정	비고
설계공모 공고	2022.7.22.(월)	·발주기관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참가등록	2022.7.22.(월)~ 2022.8.19.(월) 18:00 까지	· E-mail 접수만 가능, 등록서류 서식 참조하여 (oo@korea.kr) 로 제출 · 등록기간 중 공동응모 업체 변경가능, 대표업체는 변경불가
설계공모 설명회	2022.8.2.(금) 15:00	· 장소 : 000시청 2층 대회의실 · 참가자격 : 건축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직원에만함
질의접수	2022.8.6.(화) 09:00~18:00	· 질의서 양식에 따라 작성 · E-mail로 질의서 송부(oo@korea.kr)
질의회신	2022.8.12.(월)	· 등록업체 전원에게 E-mail로 회신 · 홈페이지 → 공지사항 공지
작품접수	2022.9.20.(금) ~17:00까지	· E-mail로 파일 제출
작품심사	2022.9.27.(금)	· 장소 : 0000
심사결과발표	2022.10.2.(수)	·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지 · 입상자 개별 유선 통보
작품전시 및 반환일정	별도 공지	· 응모작은 심사결과 발표 뒤 일정기간 전시 · 응모작(당선작 제외)은 반환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응모자가 회수함

다수의 참가 유도를 위해
등록기간 여유있게 설정

참여업체 부담경감을 위해 제출도서를
파일로 받을 수 있음

작품접수 후, 심사위원에게 자료 배포하고 검수 및
전문위원 검토기간 고려

설계지침 주요 내용 (예시)

제3장 건축 설계 지침서

1. 설계기본방향

- 1) 공모의 목적, 응모요령을 준수하고 사업개요 등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 2)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구조, 기능, 미적 차원에서 연천군의 특성을 반영한 건물을 계획한다.
- 3) 부지 인접지와 프라이버시(privacy)가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4) 신축건물 내 전반적인 부지 조성(조경포함)을 계획한다. |
- 5) 냉난방은 유지관리를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계획한다.
- 6) 예정공사비 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 7)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관련법, 설비기준령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8) 전체건물의 sky line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9) 주변환경, 지형 및 방향 등 입지여건을 충분히 분석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계획하고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하여 동선을 확보한다.
- 10) 부지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주차장과 휴게공간 등을 자연지형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어린이관련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 11) 부지의 환경조건, 시설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경제성 있게 계획한다.
- 1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집 설치기준 내용을 준수한다.

2. 배치계획

- 1) 현장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고, 기존 진입로와 주변여건, 도시계획 현황 및 계획도면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 2) 건물배치에 있어서 지형조건을 이용하되 건물의 통풍 및 배수를 최대한 고려한 계획을 한다.
- 3) 이용자, 관리자 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 4) 공원, 도로가 인접하여 있으므로 어린이 안전 및 외부인의 통제 등 감시, 관리에 유리하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 5) 용이(놀이, 학습 등)공간은 외부인의 출입과 차량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6) 현수공기, 배수, 배관 등 건물 내부에서 4차선 내외의 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한 건축물을 배치한다.
- 7) 건축물 배치공간, 차량공간, 놀이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조닝계획을 고려한다.

설계공모 단계에서 필요한 지침위주로 일반적인 내용 보다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고려사항 중심으로 간단히 제시

3. 평면계획

- 1) 일조 및 조망과 시각적, 기능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양화된 창의적인 평면형태를 창출하도록 계획한다.
- 2) 공유면적은 효율적인 공간구성과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3) 각 실의 형태는 그 실의 용도에 적합하여야 하며, 실의 장·단변 비는 에너지 절약 및 채광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4) 장애인·어린이·노약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단차 공간으로 계획하고, 홀, 로비 공간은 휠체어 및 어린이의 이동, 안전을 감안하여 여유있게 계획한다.
- 5) 공간계획은 Module을 적용하고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부공간 구성에 있어 융통성을 부여하되 효율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계획한다.
- 6) 건물의 기능 및 용도별로 분리하여 조닝별 구분하여 배치한다.
- 7) 보육실(영유아실 등)은 채광 및 환기가 유리하도록 넓측면에 배치를 권장하고 외부 공간과 연계되도록 고려한다.
- 8) 보육실은 침구, 놀이기구 및 각종 활동에 필요한 교재·교구 공간을 갖추도록 계획하고 바닥 난방시설을 고려한다.
- 9) 도난 방지 및 안전 관리가 편리하도록 동선 및 실별 배치를 계획한다.
- 10) Space Program은 각실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간만을 제시하였으므로 설계 시 순사용 면적과 기구의 배치 및 기타사항과 제시된 부대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실의 기능에 부합되도록 계획한다.

4. 입면계획 및 단면계획

- 1) 건물의 **높고**는 부지의 활용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히 계획하고 부지내의 대지 교저차를 이용하여 접근성이 좋도록 계획한다.
- 2) 건축설비의 집중 등을 감안하여 **높고**를 적절히 설정하고 각실 규모에 따라 천정 높이를 계획한다.

5. 재료 및 마감계획

- 1)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잘 유지되지 않는 내구성이나 높은 색, 경계선 등 유정성과 내구성이나 용이한 재료를 선택한다.
- 2) 내외부 마감재는 조닝의 목적을 반영하여 적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3) 색상은 주위환경이 조화되고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색채계획 및 외장계획을 수립하여 계획한다.

설계지침 주요 내용 (예시)

<p>4) 창호는 에너지절감 및 방음, 방범, 기밀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계획한다.</p> <p>5) 출입문의 잠금장치는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p> <p>6) 기계실 및 화장실 천장 배관재, 배수드레인과 승강기 계획 시 승강로 등은 차음 시설을 고려하여 계획한다.</p> <p>7)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내용을 고려하여 재료 및 마감계획을 한다.</p> <p>6. 옥외 공간 및 조경계획</p> <p>1) 조경계획은 지형, 기후, 토양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조경면적 및 식재수량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규정 이상으로 조경계획에 반영한다.</p> <p>2) 대지 내 녹지공간 조성 및 옥상정원을 통하여 쾌적한 생태환경 및 실내환경을 조성하도록 계획한다.</p> <p>3) 토목 구조물(자연석 쌓기, 옹벽, 배수로 등) 및 보·차도 색상 등은 녹지공간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p> <p>4) 옥외 주차공간은 자연환경과 보행자 통선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며 시설물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p> <p>7. 토목계획</p> <p>1) 주변 환경과의 친화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부지 조성은 기존의 지형여건을 고려한 경제적인 토목계획이 되도록 계획한다.</p> <p>2) 배수시설은 모수와 우수를 별도로 처리하는 분류식 방식으로 계획한다.</p> <p>3) 포장재료는 내구성이 강하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재료를 계획한다.</p> <p>4)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곳은 가능한 한 자연석 쌓기로 하고, 불가피 할 시는 주변 여건, 지반조건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p> <p>5) 보도와 차도 및 주차장 계획은 이용 및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p> <p>8. 구조계획</p> <p>1) 공간별, 실별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p> <p>2) 구조계획은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고, 특수구조 또는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적절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p> <p>3) 지반조건과 환경에 의한 환경·구조구제를 반영하여 시공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p> <p>4) 구조설계는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적극 고려하여 계획한다.</p>	<p>9. 기계·소방 설비계획</p> <p>1) 우수한 신공법, 신기술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권장하며, 신기술 및 신공법 선정에 따른 공법의 명칭과 적용부위,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및 성능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주어진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한다.</p> <p>2) 기계설비 설계의 기본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과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 초기투자비 및 운전비를 고려한 계획 - 추후 확장성 및 변경 대응성을 고려한 시스템 선정 - 기계설비의 자동제어를 통한 신뢰성 증대 <p>3) 냉난방 시스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식 냉난방기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와 공간, 동력, 배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냉난방시설은 냉·난방 시스템을 적절히 검토(초기투자비, 유지관리비용 등)하여 최적의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p>4) 급수 및 소방 설비는 단수, 정전될 경우를 고려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일정압의 급수공급이 가능토록 부스터펌프 및 저수조의 설치를 고려한다.</p> <p>5)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감지, 초기 화재진압, 화재피해의 최소화, 화재발생 및 확산 방지, 화재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p> <p>6)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준하는 배관을 계획하고, 사용량 검침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p> <p>7) 건축, 토목, 전기 및 통신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한다.</p> <p>10. 전기·정보통신 설비계획</p> <p>1) 전기설비 기본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공급의 신뢰성, 안전성, 확장성, 유연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전기적 사고의 사전예방 및 계통파급에 따른 피해 구간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용량 및 규격을 적용하고 계획한다. - 유지보수와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전기·소방 특선설비공시에 적용되는 관령번호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p>2) 조명계획은 실내미감 및 설비미감과 조화롭게 배치되어야 하고, 최적 설계조도로 조명계획을 하고, 에너지 절약과 유지·관리 편의를 위하여 고효율 조명기구(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구)를 우선적으로 계획한다.</p>
---	--

본 설계용역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등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음

03. 설계공모 유형별 주요 내용 및 운영요령

제출도서

**일반설계공모의 경우 설계도면, 설계설명서로 한정
제안공모의 경우 제안서로 한함**

일반설계공모 제출도서	
종류	비고
설계도면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
설계설명서	설계 개념, 다이어그램, 스케치, 텍스트 등
모형	필요에 따라 스터디 모형
조감도	필요에 따라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제안공모 제출도서	
종류	비고
제안서	수행계획 및 방법 업무이해도, 제안요청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등 포함
	설계자 경험 및 역량 대표작품의 포트폴리오

설계공모 건수가 증가하여 설계용역 1건당 참여업체 수가 평균 3~5개 업체 내외임

과도한 제출도서를 요구하는 경우 참여업체 수가 줄어 우수작품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찰 등으로 사업 지연 요인이 됨

03. 설계공모 유형별 주요 내용 및 운영요령

제출도서 (예시) _ 일반설계공모

설계용역 금액 및 공모보상비 규모 대비 적정 제출도서 량 검토 필요

설계용역비	공모보상비	제출도서 수준
5천만원~1억원	1천만원 이내	설계도면A3 (설명서통합)
1억원~2억원	2천만원 이내	
2~5억원	5천만원 이내	설계도면A3, 설계설명서A4
5~10억원	8천만원~1억원 이내, 당선작 이외 최소3개팀 선정	설계도면A3, 설계설명서A4, 설계도판A1(투시도 1컷)
10억~20억원	1억2천만원~1억6천만원 이내, 당선작 이외 최소4개팀 선정	설계도면A3, 설계설명서A4, 설계도판A1X2매(투시도 2컷) 스티로폼 모형

설계용역비 1억 원 사업의 제출도서 예시

구분	내용 및 순서		비고	쪽수	비고
설 계 도 면	1	앞표지	[서식6]활용	1	
	2	목차	-	1	
	3	건축개요	[서식7]활용	1	
	4	투시도	주요부 눈높이 레벨의 투시도, 1컷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예시참조)	1	컬러 가능
	5	배치도	현황분석도, 건축물배치 개념, 도로, 외부 주차장 등을 표기	2쪽 내외	축척 1/2~250
	6	평면도	평면개념 및 평면도, 내외부 동선계획도 표기	2쪽 내외	축척 1/1~150
	7	입면도	건물별 입면 2면 이상 표현	1쪽 내외	축척 1/1~150
	8	단면도	주요 부분 중, 횡단면도	1쪽 내외	축척 1/1~150
	9	토목, 조경, 구조, 설비계획	-	1쪽 내외	
	10	실내외 재료 마감표	-	1쪽 내외	
	11	법규검토서	-		
	12	예정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8]활용		
	13	뒷표지	-	1	내용없음
합 계				13	

03. 설계공모 유형별 주요 내용 및 운영요령

제출도서 (예시) _ 제안공모

제안공모에서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

순서	항 목	세 부 사 항	매수
1	표지		1
2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최근 10년간)	- (별도제출)
3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의 포트폴리오 (최근 10년간)	작품당 1
4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 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1
5		○ 제안요청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 1, 과제 2, 과제 3 등	과제당 1
6		○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1

〈비고〉

- A3횡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은 A4종용지로 증빙자료와 함께 별도 제출
- 백색바탕으로 하되 내용은 컬러 가능(포트폴리오 및 제안에 한한다.)
- 수행계획 및 방법에서 항공사진, 설계도면, 조감도, 투시도, 시뮬레이션, 모형사진,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고급 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불가

출처 :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72호) [별표4]

03. 설계공모 유형별 주요 내용 및 운영요령

제출도서 (예시) _ 제안공모

제안공모에서 제안요청과제 예시

① 업무에 대한 이해도

-OOO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건축설계, 구조설계, 조경설계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

② 과제에 대한 기술 제안

-전망대 디자인 개념 제시

주변 자연환경 및 문화재 보호환경 등을 감안한 전망대 디자인 개념 제시

※ 전망대 디자인의 제출물 수준은 제안공모 취지를 감안하여 과도하게 상세한 설계안 요구는 지양

-관광 시나리오 및 콘텐츠와 연계된 탐방로, 정원, 전망대, 휴게공간 구성 개념 제시

콘텐츠 스토리, 도입 시설, 운영 소프트 웨어 측면에서 기본계획 안에 대한 개선 방안 제안

-산악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공을 위한 설계전략 개념 제시

자재의 운반 여건(헬기, 케이블카), 현장시공의 어려움 등을 감안한 건축물 및 시설물 디자인 개념

③수행계획 및 방법

-문화재 심의 등 인허가 절차 수행 및 분야별 협업에 대한 전략 등

다양한 전문가, 관계자 간 협의체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문화재 관련 자문회의 운영 방안

분야별 전문가 협업 방안

03. 설계공모 유형별 주요 내용 및 운영요령

심사위원 선정 등

심사위원을 사전에 선정하고 설계공모 공개 시 함께 공고해야함

기존 관행

설계공모 공고시 심사위원 명단을 함께 공개하지 않고 심사 3~7일전 별도 공개하거나 작품접수시 응모자들의 추천으로 심사위원을 결정하여 공개하는 것은 **규정위반사항에 해당함**

사유1 심사위원명단공개시 사전접촉, 부정청탁 등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증가함

사유2 심사위원을 발주기관이 선정하여 위촉하는 경우 특정 그룹, 인물에 대한 특혜 시비 등 민원이나 감사의 부담

사유3 설계공모 심사에서 활용가능한 심사위원 POOL 부재

심사위원 명단 공개 의미

심사위원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심사하실 분을 섭외

심사위원의 활용 및 책무

사전에 선정하여 설계공모지침서 및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 미리 지문을 받음 / 사업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심사에 참여 / 심사 이후에도 선정결과에 책임지는 의미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자문위원으로 일관되게 계속 활용

심사위원사전선정 및 공개는 설계공모 당선결과 뿐만 아니라 사업전반의 품질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준수할 필요

03. 설계공모 유형별 주요 내용 및 운영요령

심사위원 선정 등

외부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구성

「건축기본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역건축위원회, 민간전문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설계공모 관련 업무를 의뢰받은 전문기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의 용도, 규모, 특성,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외부 심사위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건축기본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역건축위원회
2.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민간전문가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설계공모 관련 업무를 의뢰받은 전문기관
5. 제11조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② 심사위원(예비심사위원 포함)의 명단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와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발주기관등에 제출해야 한다.

03. 설계공모 유형별 주요 내용 및 운영요령

심사위원 선정 등

심사위원 기피, 제척, 회피 방안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당해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⑦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제6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발주기관등은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제7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⑨ 심사위원은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⑩ 발주기관등은 해당 심사위원이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⑪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결원에 대비하여 30% 내외의 예비심사위원을 사전에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위원을 모든 심사 과정에 심사위원과 동일하게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개최전에 심사대상자 명단을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제12조 제9항에 따른 회피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를 진행

심사위원 제척, 기피, 회피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예비위원을 모든 심사 과정에 심사위원과 동일하게 참석

03. 설계공모 유형별 주요 내용 및 운영요령

설계공모 공고 및 질의 응답

설계공모 공고 시 자료 예시

공고문, 설계공모 지침서,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부지경계도

질의 응답 예시

제출물	15	[지침서 8페이지] 설계도판의 모든 내용에 컬러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투시도, 조감도만 컬러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설계도판은 컬러사용에 제한 없습니다.
	16	[지침서 8-9페이지] 설계도판 배치기준에 조감도 또는 투시도(1컷)로 표기되어 있는데, 공통사항 지침(투시도는 주요부 눈높이 레벨의 투시도 1컷)과 상충되므로 확인 필요	조감도는 원칙적으로 제외 ※ 지침서 9페이지에 표기된 조감도는 해당 없음
	17	[지침서 9페이지] 개념도 등에 사용되는 다이어그램에 3차원 표현 가능 여부	계획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다이어그램, 스케치, 이미지 등은 허용하되 렌더링 등 과도한 3차원 입체 표현은 지양합니다.

제출물 작성 관련하여 3차원 이미지 허용 가능범위에 대한 질의의 경우 원칙적인 답변이 합리적임

03. 설계공모 유형별 주요 내용 및 운영요령

설계공모 평가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0조(평가) ① 발주기관등은 설계지침 미준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 ②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심사위원은 전문위원회가 제출한 검토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③ 발주기관등은 심사 시 설계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간의 공모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 ④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등이 사업 특성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평가 전에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는 경우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⑤ 발주기관등은 해당 사업의 특성을 참고하여 투표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주안점, 채점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정해야 하며, 제5조제1항에 따라 이를 공모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 구성 예시 : 특수챔버 실험동 설계공모에서 기계설비분야 전문위원회 운영, 청소년시설 조성 설계공모에서 청소년 육성재단 등 운영전문가
전문위원회 운영 등

평가방식: 다양한 방식 활용 가능하나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하여도 평가사유서는 구체적으로 작성

03. 설계공모 유형별 주요 내용 및 운영요령

설계공모 평가 _ 작품검수

심사번호	감점 사항 종합	제출물형식		제출물작성기준		설계지침		건축법규	
		감점소계	내용	감점소계	내용	감점소계	내용	실격 및 감점 (위원회결정)	내용
AB	-0.1	-0.1	설계도면 표지 규격위반	0		0			피난계단설치 누락
BU	-1.1			-1.1	3차원이미지 과다사용, 개념 명칭 사용	0			중심지미관지구 건축후 퇴선 미준수
CH	-0.1			-0.1	3차원이미지 과다사용	0			중심지미관지구 건축후 퇴선 미준수
DN	0			0		0			
FY	-1.2			-1	개념 명칭 사용	-0.2	근생면적 5%미달, 오피스텔면적 8.3% 미달		
GJ	-1			-1	개념 명칭 사용	0			
HC	-1.7			-1.1	3차원이미지 과다사용, 개념 명칭 사용	-0.6	전체연면적 2.1%초과, 근생면적 5.8% 미달		피난계단설치 누락
HK	-1.1			-1.1	3차원이미지 과다사용, 개념 명칭 사용	0			
IS	0			0		0			
IV	-0.2			-0.2	조감도 사용	0			피난계단설치 누락
JL	-2			-1.3	조감도 사용, 실명 누락, 개념 명칭 사용	-0.7	전체연면적 4.4%초과, 근생면적32%미달, 오피스텔면적 7.8%미달		
JY	-1.2			-1	개념 명칭 사용	-0.2	근생면적 27%미달, 공동취사 공간 누락		
KP	0			-1.1	3차원이미지 과다사용, 개념 명칭 사용	-0.2	전체연면적 2.4%미달		
KW	-1			-1	개념 명칭 사용	0			

제출물 형식, 제출물 작성 기준, 설계지침, 건축법규 위반 사항으로 구분하고 제출작품을 사전에 검수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

03. 설계공모 유형별 주요 내용 및 운영요령

설계공모 평가 _ 작품검수



03. 설계공모 유형별 주요 내용 및 운영요령

심사위원회 개최 자료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심사위원회 개요, 사업개요
심사위원회 운영, 심사방법
평가기준(감점기준)
설계지침
부지현황자료
질의회신주요내용
작품검수결과

사업설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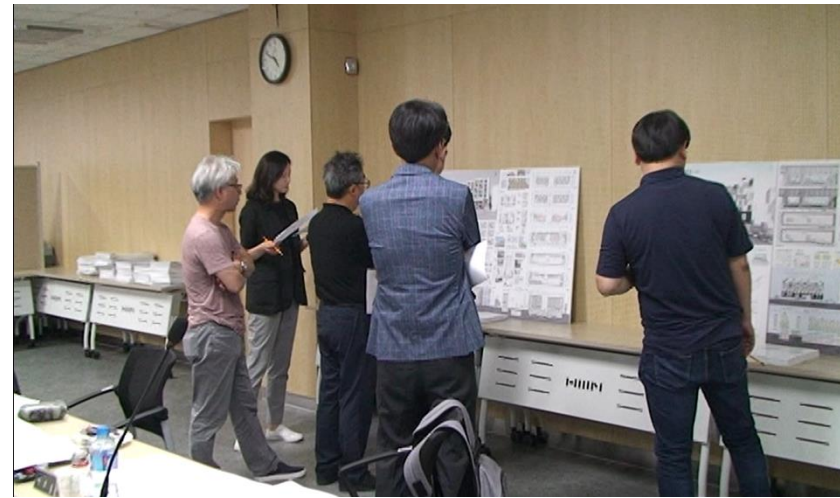
사업목적 및 추진경위
개발계획
시설운영계획 등

심사서식

평가검토표 / 투표용지
심사위원 선정동의 및 보안각서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제출도서 감점 및 실격 여부
평가점수표 / 평가사유서
심사의결서 / 심사의견서

03. 설계공모 유형별 주요 내용 및 운영요령

심사위원회 개최



03. 설계공모 유형별 주요 내용 및 운영요령

심사 결과 공개

The grid displays 21 thumbnails representing different stages of a design competition:

- Thumbnail 1:** Introduction and competition overview, including a list of participating firms and a table of evaluation criteria.
- Thumbnail 2:** Site plan and location map.
- Thumbnail 3:** List of participating firms (참가등록명단).
- Thumbnail 4:** Photos of the competition site and related activities.
- Thumbnail 5:** Detailed architectural drawings and site plans.
- Thumbnail 6:** 3D architectural rendering of the proposed building.
- Thumbnail 7:** Another 3D architectural rendering from a different angle.
- Thumbnail 8:** Architectural drawings and site plans.
- Thumbnail 9:** Architectural drawings and site plans.
- Thumbnail 10:** Architectural drawings and site plans.
- Thumbnail 11:** Architectural drawings and site plans.
- Thumbnail 12:** Architectural drawings and site plans.
- Thumbnail 13:** Photos of a meeting or presentation.
- Thumbnail 14:** Photos of a meeting or presentation.
- Thumbnail 15:** Meeting agenda and schedule.
- Thumbnail 16:** Meeting agenda and schedule.
- Thumbnail 17:** Meeting agenda and schedule.
- Thumbnail 18:** Meeting agenda and schedule.
- Thumbnail 19:** Meeting agenda and schedule.
- Thumbnail 20:** Meeting agenda and schedule.
- Thumbnail 21:** Meeting agenda and schedule.

심사개요, 참가등록명단, 작품제출자 명단, 심사위원회 기록, 평가집계결과, 심사의결서, 각 작품별 평가사유서 등

설계 공모 내용 요약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통계를 살펴보면 다수의 사업이 일반설계공모를 통한 발주 비율(70.0%)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제안공모(21.3%)임. 통계결과처럼 대부분 공공건축물의 설계발주는 일반설계공모 방식을 우선 고려하되 이외에 특수한 여건이 있는 경우 제안공모, 2단계공모, 간이공모(21년 신규도입) 방식 등을 적용

대부분의 발주기관은 사업부서 내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사업을 전담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설계공모에서 구체적인 설계안을 확정하여 본 설계과업을 진행하는 **일반설계공모 방식의 적용이 합리적임**

공모기간을 단축하거나 보상비를 여유 있게 책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안공모나 간이공모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설계공모를 통한 **우수한 설계안(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구체적인 평가를 반드시 요구**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 개최 전 사업설명, 부지답사, 심사방식 결정 등을 위한 사전모임 개최
- 심사위원회 때 사전접촉 확인서, 회피 신청서 징구
- 평가작품에 대한 사유서는 모든 작품별로 받아서 가능한 자세한 평가기록을 확보하고 공개
- 심사결과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 공개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등 민원 발생 시 심사위원회와 적극 논의하여 답변

감사합니다